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2.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2
- 다. 상 정 일 자 : 97. 2 (제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 안 자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 나. 제안사유
 -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결함 보전과 수질개선등 맑은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관리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시설 분담금. 손료. 제수수료 인상 : 29%
 - 상수도 요금 인상

구 분	가 정 용	업 무 용	영 업 용	옥탕 1.2층
인상율	15%	20%	20%	15%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민병항)

- 본 조례 개정은 우리군의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결함 보전과 수질개선등 맑은물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요금 인상조례 개정안으로 화순군 물가대책 위원회의결 및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18
----------	---------

제출년월일 : 1997. 2. 18.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우리 군 지방상수도 재정결함 보전과 수질개선등 맑은 물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분담금, 상수도요금, 손료, 제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시설분담금, 손료, 제수수료 인상 : 29%
- 상수도 요금 인상
 - 가 정 용 : 15%
 - 업 무 용 : 20%
 - 영 업 용 : 20%
 - 옥탕 1,2종 : 15%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6조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2조 제2항중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6조 제1호 내지 제5호중 "2, 650원"을 "3, 420원"으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중 "5, 290원"을 "6, 820원"으로 하며 제4호중 "1, 320원"을 "1, 7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제1호】

시 설 분 담 금

계량기 구경별	분담금액	비고
13 mm	26,450원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 mm	63,480원	
25 mm	105,800원	
40 mm	256,570원	
50 mm	423,200원	
75 mm	846,400원	
100 mm	1,692,800원	
150 mm	3,385,600원	
200 mm	6,771,200원	
250 mm	10,580,000원	

(개정안)

【별표 제1호】

시 설 분 담 금

계량기 구경별	분 담 금 액	비 고
13 mm	34, 120원	개조시에는 신규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 mm	81, 890원	
25 mm	136, 480원	
40 mm	330, 980원	
50 mm	545, 930원	
75 mm	1, 091, 860원	
100 mm	2, 183, 710원	
150 mm	4, 367, 420원	
200 mm	8, 734, 850원	
250 mm	13, 648, 200원	

(현 행)

【별표 제2호】

기본요금 및 톤당 가격표

(단위: 원)

종 별	단 계 별	요 금	비 고	
가 정 용	기본 요금 (10톤)	2,000		
	초 과	11 ~ 20톤	300	
		21 ~ 30톤	330	
		31 ~ 40톤	380	
		41 ~ 50톤	400	
		51톤 이상	510	
업 무 용	기본 요금 (20톤)	6,240		
	초 과	21 ~ 50톤	430	
		51 ~ 100톤	470	
		101 ~ 300톤	510	
		301톤 이상	570	
영 업 용	기본 요금 (30톤)	10,920		
	초 과	31 ~ 50톤	380	
		51 ~ 100톤	580	
		101톤 이상	1,050	
옥 탕 1 종	기본 요금 (200톤)	62,650		
	초 과	201 ~ 300톤	340	
		301 ~ 500톤	540	
		501톤 이상	570	
옥 탕 2 종	기본 요금 (200톤)	88,840		
	초 과	201 ~ 500톤	350	
		501 ~ 1000톤	520	
		1001톤 이상	620	

(개정안)

【별표 제2호】

기본요금 및 톤당 가격표

(단위: 원)

종 별	단 계 별	요 금	비 고	
가 정 용	기본 요금 (10톤)	2,300		
	초 과	11 ~ 20톤	350	
		21 ~ 30톤	380	
		31 ~ 40톤	440	
		41 ~ 50톤	460	
		51톤 이상	590	
업 무 용	기본 요금 (20톤)	7,490		
	초 과	21 ~ 50톤	520	
		51 ~ 100톤	560	
		101 ~ 300톤	610	
		301톤 이상	680	
영 업 용	기본 요금 (30톤)	13,100		
	초 과	31 ~ 50톤	460	
		51 ~ 100톤	700	
		101톤 이상	1,260	
옥 탕 1 종	기본 요금 (200톤)	75,180		
	초 과	201 ~ 300톤	410	
		301 ~ 500톤	650	
		501톤 이상	680	
옥 탕 2 종	기본 요금 (200톤)	106,610		
	초 과	201 ~ 500톤	420	
		501 ~ 1000톤	620	
		1001톤 이상	740	

(현 행)

【별표 제4호】

급 수 장 치 손 료

(단위:원)

계량기 구경별	손 료	비 고
13 mm	210원	
20 mm	290원	
25 mm	350원	
40 mm	630원	
50 mm	1,080원	
75 mm	1,320원	
100 mm	1,730원	
150 mm	2,200원	
200 mm	5,290원	
250 mm	6,610원	

(개정안)

【별표 제4호】

급수장치손료

(단위:원)

계량기 구경별	손 료	비 고
13 mm	270원	
20 mm	370원	
25 mm	450원	
40 mm	810원	
50 mm	1,390원	
75 mm	1,700원	
100 mm	2,230원	
150 mm	2,840원	
200 mm	6,820원	
250 mm	8,53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6조 (생략)		제36조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급수관구경 25mm까지	-	-
	2,650원	-	-
	급수관구경 40mm까지	-	-
	5,290원	-	-
	(생략)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급수관구경 25mm까지	-	-
	2,650원	-	-
	급수관구경 40mm까지	-	-
	5,290원	-	-
	(생략)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급수관구경 25mm까지	-	-
	2,650원	-	-
	급수관구경 40mm까지	-	-
	5,290원	-	-
	(생략)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급수관구경 25mm까지	-	-
	1,320원	-	-
	급수관구경 40mm까지	-	-
	2,650원	-	-
	(생략)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급수관구경 25mm까지	-	-
	2,650원	-	-
	급수관구경 40mm까지	-	-
	5,290원	-	-
	(생략)		(현행과 같음)